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5. 11 선고 2020가단648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(개명 전 이름 : B)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4. 13.

판 결 선 고 2021. 5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3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2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2018. 11. 13.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33,000,000원을 이체하였다.

나. 한편 피고는 2018. 10.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를 택배로 제공하였다.

2.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OTP 등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, 위 우리은행 계좌로 33,000,000만원을 이체받아 취득하였으므로, 원고에 대하여 위 33,000,000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갑 제1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피고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OTP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, 당시 위 우리은행 계좌가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, 예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(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21821 판결,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2다84707 판결 등 참조),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33,000,000원은 즉시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날 제3자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가 위 33,000,000원을 직접 취득하였다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(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다37325, 37332 판결,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) 등을 종합해 보면, 위 기초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33,000,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추경준